

주주님께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8월 11일(금요일) 오전 08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과천시 은행나무길 32-1 (주암동, 담원빌딩) 2층 교육장

### 3. 회의목적사항

(1)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분할합병 승인의 건  
[별첨1] 분할합병계약서의 요령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3] 정관 일부 변경(案)
- 제3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규정 제정의 건  
[별첨4] 임원퇴직금지규정 제정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1) 직접행사 : 신분증
- (2)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6. 기타

주주총회 기념품은 제작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4 (서현동, 유니퀘스트빌딩) (☎031-776-9989)

**유 니 퀘 스투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앤드류김 (직인생략)**

※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당사 정관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등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별첨 1] 분할합병계약서의 요령

### I.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 1. 분할합병의 당사회사의 개요

|                        |      |                     |
|------------------------|------|---------------------|
| 합병회사<br>(분할합병<br>상대회사) | 상호   | 주식회사 드림텍            |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4 |
|                        | 대표이사 | 김형민, 박찬홍 (각자대표)     |
|                        | 법인가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분할합병회사                 | 상호   | 유니퀘스트 주식회사          |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4 |
|                        | 대표이사 | 앤드류김                |
|                        | 법인가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2. 분할합병의 목적

본 분할합병은 분할합병 상대회사인 (주)드림텍이 유니퀘스트(주)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흡수합병하는 건입니다. 본 분할합병으로 (주)드림텍은 (주)에이아이매틱스의 지분 승계, (주)나무가의 지분 추가 승계 등을 통해 그룹의 인지 AI(Cognitive AI) 토털 솔루션 사업을 총괄하고, 유니퀘스트(주)는 주요 사업영역인 반도체 유통 솔루션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그룹의 각 사업영역별 효율성과 합리성을 증진시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3. 분할합병의 방법

본 분할합병의 방법은 인적분할되는 유니퀘스트(주)의 투자사업부문을 (주)드림텍이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으로, 유니퀘스트(주)는 분할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부문만으로 존속합니다. (주)드림텍은 본건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 기존 유니퀘스트(주)가 보유하던 (주)드림텍 보통주식 22,037,400 주를 자기주식으로 승계합니다. (주)드림텍은 승계받은 자기주식 22,037,400 주와 합병신주 2,162,504 주를 배정기준일 현재 유니퀘스트(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주주들에게 교부하며, 교부주식수는 각 주주들의 지분비율과 분할합병비율을 통해 산정합니다. 다만, 합병에 반대하는

유니퀘스트(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유니퀘스트(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는 합병대가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 II. 분할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 1. 합병대가의 배정

#### (1) 합병대가의 배정조건, 배정비율 및 배정방법

(주)드림텍은 본건 분할합병에 따라 유니퀘스트(주)가 보유하던 (주)드림텍의 보통주식을 22,037,400 주를 자기주식으로 승계하고, 분할합병기일 현재 유니퀘스트(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유니퀘스트(주) 보통주식(액면금액 500 원) 1 주당 (주)드림텍 보통주식(액면금액 100 원) 0.9247922 주의 비율로 상기 승계한 자기주식 22,037,400 주 및 합병신주 2,162,504 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합니다.

-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2023 년 09 월 27 일 (분할합병기일 : 2023 년 10 월 01 일)

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 합병대가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대가의 배정으로 1 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대가 교부일(2023 년 10 월 20 일 예정)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상장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 341 조의 2 제 3 호에 따라 (주)드림텍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 (3)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합병에 반대하는 유니퀘스트(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유니퀘스트(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도 합병대가(신주발행 및 자기주식교부)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 (4)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드림텍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3년 10월 20일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2023년 10월 20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교부금 등의 지급

(주)드림텍이 유니퀘스트(주)의 분할합병 대상부문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수가액의 지급 외에 별도의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4.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주)드림텍과 유니퀘스트(주)의 분할합병 대상부문간 분할합병 시 (주)드림텍이 승계하는 임직원은 없습니다.

#### 5. 합병비율

##### (1) 분할합병비율 산정

##### 1) 분할합병의 합병가액·비율

(단위: 원)

| 구분          | 드림텍<br>(합병법인) |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br>(피합병법인) |
|-------------|---------------|-------------------------|
| 가. 기준시가(주1) | 9,100         | 해당사항 없음                 |

| 구분             | 드림텍<br>(합병법인) |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br>(피합병법인) |
|----------------|---------------|-------------------------|
| 나. 본질가치(주2)    | 해당사항 없음       | 50,346                  |
| A. 자산가치        | 5,862         | 48,501                  |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51,576                  |
| 다.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라. 합병가액/1주(주3) | 9,100         | 50,346                  |
| 마. 합병비율(주4)    | 1             | 5.5327682               |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드림텍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며,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은 비상장법인과 동일한 형태로 기준시가가 아닌 본질가치 평가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는 원단위 이하를 절사하지 않았습니다.

(주3)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드림텍의 경우 기준시가가자산가치보다 높으므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합병비율(5.5327682)은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 보통주 1주당 교부되는 합병법인의 보통주 주식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분할 전 유니퀘스트 보통주 1주에 대하여 교부되는 합병법인의 주식수를 의미하는 분할 합병비율은  $1 : 0.9247922[0.1671482(\text{분할비율}) \times 5.5327682(\text{합병비율})]$ 로 산정되었습니다.

## (2) 산출근거

### 1) (주)드림텍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176 조의 5 제 1 항 제 2 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드림텍의 경우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높으므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 가. 기준시가 | 9,100 |
| 나. 자산가치 | 5,862 |
| 다. 합병가액 | 9,100 |

2) 유니퀘스트(주) 분할신설무분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5 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 과 1.5 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 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할합병부문인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의 주권은 재상장되지 않으며, 분할합병부문은 비상장형태이므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5 제 1 항 규정 및 유사 분할합병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본질가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피합병법인   |
|--|---------|
| 가. 본질가치 $[(A \times 1 + B \times 1.5) \div 2.5]$ | 50,346  |
| A. 자산가치  | 48,501  |
| B. 수익가치  | 51,576  |
| 나. 합병가액(=가)                                      | 50,346  |
| 다.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세부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증권신고서(합병)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본건 분할합병 당사자들인 (주)드림텍과 유니퀘스트(주)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기준일(2023년 07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 중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분할합병에 대한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드림텍과 유니퀘스트(주)는 각 당사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023년 09월 27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분할합병 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주)드림텍과 유니퀘스트(주)는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식의 매수가격<br>(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주)드림텍 | 유니퀘스트(주) |
|-------------------------------|--------|----------|
| 기명식 보통주식                      | 9,091원 | 11,287원  |

### 3.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 (1)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 522 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3 년 07 월 18 일) 현재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제 1 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분할합병에 대한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3 년 07 월 03 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3 년 07 월 04 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 영업일 전(2023 년 08 월 08 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 영업일 전(2023 년 08 월 09 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 영업일 전(2023 년 08 월 10 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으나,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 522 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 영업일 전(2023년 08월 29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위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으나,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3) 주식매수 청구기간

| 구 분                   |     | 일자            |
|-----------------------|-----|---------------|
| 주주확정 기준일              |     | 2023년 07월 18일 |
| 분할합병<br>반대의사표시 접수     | 시작일 | 2023년 07월 03일 |
|                       | 종료일 | 2023년 08월 10일 |
|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     | 2023년 08월 11일 |
| 주식매수청구권<br>행사기간       | 시작일 | 2023년 08월 11일 |
|                       | 종료일 | 2023년 08월 31일 |

## (4) 주식매수 청구장소

| 구분       | 장소                   | 비고                             |
|----------|----------------------|--------------------------------|
| (주)드림텍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4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
| 유니퀘스트(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4 |                                |

####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분할합병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드림텍(주) 및 유니퀘스트(주)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드림텍(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400 억원(₩40,000,000,000)을 초과하거나, 유니퀘스트(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200 억원(₩2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합병 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분할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 (1)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주)드림텍과 유니퀘스트(주)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주)드림텍과 유니퀘스트(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주)드림텍 : 2023 년 09 월 27 일(예정)

유니퀘스트(주) : 2023 년 09 월 27 일(예정)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식 1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합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            |   |
|------------|---|
| 주주번호       |   |
| 소유주식수      | 주 |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 주 |

년 월 일

주 소 :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유니퀘스트(주) 대표이사 귀하

-----절 취 선-----

서식 2

### 주식매수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            |   |
|------------|---|
| 주주번호       |   |
| 소유주식수      | 주 |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 주 |
|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 주 |

년 월 일

주 소 :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유니퀘스트(주) 대표이사 귀하

### [별첨3] 정관 일부 변경(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현 행   | 변 경(안)  | 비 고  |
|---|---|--|
| <p><b>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b><br/>                     ① &lt;생략&gt;<br/>                     1.~2. &lt;생략&gt;<br/>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p>  | <p><b>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b><br/>                     ① &lt;현행과 동일&gt;<br/>                     1.~2. &lt;현행과 동일&gt;<br/>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p>  | <p>- 이사회 결의로 발행가능한 신주 발행한도 상향</p>  |
| <p><b>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b><br/>                     ① &lt;생략&gt;<br/>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br/>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 <p><b>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b><br/>                     ① &lt;현행과 동일&gt;<br/>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br/>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 <p>- 이사회 결의로 발행가능한 전환사채의 액면총액 한도 상향<br/><br/>                     - 이사회 결의로 발행가능한 전환사채의 액면총액 한도 상향</p> |
| <p><b>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b><br/>                     ① &lt;생략&gt;<br/>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p>  | <p><b>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b><br/>                     ① &lt;현행과 동일&gt;<br/>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p>  | <p>- 이사회 결의로 발행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 한도 상향</p>  |

| 현 행   | 변 경(안)  | 비 고   |
|---|---|---|
| <p>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 <p>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u>5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 <p>- 이사회 결의로 발행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 한도 상향</p> |
| <p>&lt;신설&gt;</p>   | <p><b>부칙</b><br/> <u>이 정관은 202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u></p>   |   |

## [별첨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1.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감사를 둔 경우)로서 상근인자를 말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감사이면서 상근하지 않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 3 조 (지급조건)

1.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이 퇴직하거나 또는 재임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2. 단,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어 회사에 재직할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 4 조 (퇴직금의 산정방법)

1.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 x 근속년수 x 지급률]로 한다.
2. 평균임금은 퇴직발령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로 하며, 급여는 연봉계약에 따른다.
3. 지급률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는 4, 기타 사내이사 및 감사는 2로 한다.

### 제 5 조 (근속년수의 계산)

1. 근속년수는 임원으로 입사하거나 선임된 날로부터 퇴직 발령일까지로 한다. 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과 정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근속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 제 6 조 (특별위로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4조에 의한 퇴직금 외에 별도로 이사회 결의에 의해 퇴직 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사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업무상 상병으로 퇴직한 자 및 순직자

### 제 7 조 (지급방법)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 제 8 조 (적용 제외)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현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결의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년 8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